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2.

발 의 자 : 김주영 · 정혜경 · 이학영
임호선 · 장철민 · 서영교
어기구 · 진성준 · 박민규
정진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‘중대시민재해’로 규정하고, 해당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·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땅꺼짐,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,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‘공중이용시설’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‘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’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, 활주로나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, 제조,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

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(안 제2조).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공중교통수단의”를 “공중교통수단 및 해당 제반시설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마목(종전의 라목) 중 “다목까지에”를 “라목까지에”로 한다.

라. 도로, 보도, 활주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“중대시민재해”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<u>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</u> 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	3. ----- ----- ----- <u>공중교통수단 및 해당 제반시설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4. “공중이용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 시설과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	4. ----- ----- ----- -----.

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 시설은 제외한다. 가. ~ 다. (생략) <u><신설></u>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·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. ~ 9. (생략)	----- ----- -----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도로, 보도, 활주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. -----라목까지에----- ----- ----- ----- 5. ~ 9. (현행과 같음)
--	--